#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채익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63

발의연월일: 2021. 4. 1.

발 의 자:이채익・백종헌・김기현

서병수 · 정진석 · 정찬민

유영석 · 김영식 · 김태호

이명수 · 이용호 의원

(119]

### 제안이유

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수많은 소상 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에 따른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나, 정부의 지원은 피해규모의 일부에 국한되는 등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음

이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 등의 조치로 영업손실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해서는 영업손실 보상, 정책자금 상환연기·이자감면, 국세·지방세·공과금·사회보험료 경감 또는납부 유예 등의 지원을 해주고자 함.

# 주요내용

가. 재난으로 인하여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집합금지조치 및 집합 제한조치로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의 보상, 정부 정책자 금의 상환기환 연장 및 그 이자의 감면, 국세·지방세·공과금·사회보 험료의 경감 또는 유예 등을 지원하도록 함(안 제12조의4 신설).

나. 이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휴업 및 폐업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보상을 하도록 함(안 부칙 제2조).

#### 법률 제 호

#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4(감염병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) ① 정부는 「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방역당국으로부터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이조에서 "소상공인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- 1.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
- 2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 금·보조금 지원 등 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장과 그 이자의 감면
- 3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료·연금보 험료 및 각종 공과금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금액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소상공인 감염병 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4의
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
나목에서 규정한 재난 중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에 따른 감염병으로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
는 집합제한 조치 명령을 받아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등에게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2조의4(감염병 재난 피해에
	대한 지원) ① 정부는 「재난
	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
	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
	<u>방역당국으로부터 「감염병의</u>
	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	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
	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
	아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
	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본
	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	(이하 이 조에서 "소상공인등"
	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다음
	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.
	1.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
	따른 영업손실의 보상
	2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
	따라 소상공인등에 대한 정부
	의 융자금·보조금 지원 등 정
	책자금의 상환기한 연장과 그
	이자의 감면
	3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
	<u>따라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</u>

료·연금보험료 및 각종 공과 금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금액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